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0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1.

발 의 자:김정재・태영호・한무경

이주환 · 김용판 · 김영식

양금희ㆍ이양수ㆍ송석준

김기현 · 서범수 · 구자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.

현행법은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또는 현저한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갈 경우 범죄에 노출되 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 호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외한다"를 "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2(가출청소년의 청소년	제32조의2(가출청소년의 청소년
쉼터 계속 이용) 청소년쉼터(가	쉼터 계속 이용) <u>①</u>
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	
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	
는 <u>제외한다</u>)를 설치·운영하는	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
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	<u>서 같다</u>
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, 친	
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	
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	
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	
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	
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	
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	
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
	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
	출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
	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

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